

안 의

		심의결과	관입대표가결
의안번호	제의자수	제 의 자	제 의 자
58	11	1982. 6. 27	총재 타영기

의안 「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개정
 일부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개정」을
 불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외관계
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9조

제외처지 동지예금이 폐지됨에 따라 동 예금을 저축
 성예금 분류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불권 전
 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참고사항 1. 제외관계 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59조

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, 제58조

변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
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.

1.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또는 기타

금융외환영지원의 분류에 의한

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회

계 예금지급준비금의 결정

2.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100분의 25

까지 한국은행권으로서 보유하는 것

의 허용

(붙임)

「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

현

제1조 ~ 제2조 (생략)

제3조 (예금의 분류)

① 제2조에 의한 저축성예금은 다음과 같으며, 기타예금은
요구불예금으로 분류한다.

정기예금, 정기적금, 통지예금, 저축예금

② (생략)

제4조 ~ 제6조 (생략)

(신설)

개

제1조 ~ 제2조 (현행과 같음)

제3조 (예금의 분류)

① 제2조에 의한 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저축
예금으로 하며, 기타예금은 요구불예금으로 분류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 ~ 제6조 (현행과 같음)

부칙

이 규정은 1982. 9. 26 부터 시행한다.

1984